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97
----------	------

202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6. 5.27
4.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승인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박경환)

- 다음은 안건번호 제3697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1,487억원을 편성하여 28건, 1,157억원을 지출결정 후 1,15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3억원을 편성하여, 21건, 1,120억원 지출결정 후 1,11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251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405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205억원을 편성하여, 7건, 3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억원 등임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제안경위<sup>1)</sup>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6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를 통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에도 '26년 5월,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임

---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지방재정법」 등은 **일반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회계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각 회계별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준수한 **일반예비비** 1,175억 6,600만원과 편성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7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1,175억 6,600만원)보다 114억 1,100만원 증액조정함에 따라 전체 예비비 편성규모가 총 1,489억 7,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를 △2억 3,500만원 감액조정함에 따라 전체 예비비 편성 규모는 총 1,487억 4,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임

〈표 3-1〉 2025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sup>주1)</sup> 을 통한 증감 조정액	제2회 추경 <sup>주2)</sup> 을 통한 증감 조정액	최종예산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 <sup>주3)</sup>	예산총액			예비비 예산액 (구성비) <sup>주3)</sup>	예산총액
<b>총 계</b>	<b>137,566 (0.29)</b>	<b>48,114,455</b>	<b>11,411</b>	<b>△235</b>	<b>148,741 (0.28)</b>	<b>52,142,651</b>
<b>일 반 회 계</b>	<b>113,944 (0.33)</b>		<b>14,306</b>	<b>-</b>	<b>128,250 (0.33)</b>	
일 반 예 비 비	93,944 (0.27)	<b>34,418,927</b>	14,306	-	108,250 (0.28)	<b>37,775,648</b>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0.06)		-	-	20,000 (0.05)	
<b>특 별 회 계</b>	<b>23,622 (0.17)</b>	<b>13,695,527</b>	<b>△2,895</b>	<b>△235</b>	<b>20,490 (0.14)</b>	<b>14,367,002</b>
<b>기 타 특 별 회 계</b>	<b>12,989 (0.11)</b>	<b>11,755,415</b>	<b>△2,895</b>	<b>△235</b>	<b>9,857 (0.08)</b>	<b>12,125,495</b>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00 (0.00)	1,816,460	△75	10	34 (0.00)	1,806,576
교통사업특별회계	3,068 (0.18)	1,688,357	△2,004	△297	766 (0.04)	1,895,70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 (0.44)	74,260	△33	-	299 (0.36)	81,926
주택사업특별회계	2,772 (0.09)	3,075,836	△104	-	2,667 (0.08)	3,012,070
도시개발특별회계	4,717 (0.23)	1,975,637	△641	51	4,127 (0.19)	2,082,620
균형발전특별회계	626 (0.25)	249,960	△36	-	589 (0.30)	192,6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9 (0.33)	11,485	-	-	39 (0.18)	21,2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00)	1,822,188	-	-	- (0.00)	2,002,15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7 (0.89)	29,680	-	-	267 (0.90)	29,382
소 방 특 별 회 계	1,065 (0.10)	1,011,548	-	-	1,065 (0.10)	1,001,175
<b>공 기 업 특 별 회 계</b>	<b>10,632 (0.54)</b>	<b>1,940,112</b>	<b>-</b>	<b>-</b>	<b>10,632 (0.47)</b>	<b>2,241,506</b>
수도사업특별회계	9,985 (0.96)	1,030,000	-	-	9,985 (0.89)	1,116,189
공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 (0.07)	910,112	-	-	647 (0.05)	1,125,317

주1) '25. 5.26 제출, '25. 6.27 본회의 의결

주2) '25. 8.29 제출, '25. 9.12 본회의 의결

주3) (구성비)는 예비비 예산액(편성액)이 예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5년도 예산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및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② '25회계연도 결산서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18269 ('26. 4. 9) 등 재구성

- '2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검토하면, 전체 예비비 예산액(1,487억 4,100만원) 중 77.8%, 1,157억 500만원(28건)을 지출결정하여 1,154억 5,700만원(28건)을 지출한 것으로,
  - 일반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1,082억 5,000만원) 중 99.9%, 1,082억 3,600만원(20건)을 지출결정하여 1,080억 1,900만원(20건)을 지출한 것임
  -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예비비**는 예산액(204억 9,000만원) 중 18.2%, 37억 3,100만원(7건)을 지출결정하여 37억원(7건)을 지출한 바,
    - 기타특별회계(10개) 중 예비비를 편성한 9개 회계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액(41억 2,700만원) 중 77.7%, 32억 700만원(5건)을 지출결정하여 32억 600만원(5건)을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8개 회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2개)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99억 8,500만원) 중 5.2%, 5억 2,300만원(2건)을 지출결정하여 4억 9,400만원(2건)을 지출하였으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지출결정된 내역이 없어 예비비 예산액(6억 4,700만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중 18.7%, 37억 3,700만원(1건)을 지출결정하여 37억 3,700만원(1건)을 지출함

〈표 3-2〉 2025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①	지출결정액 (구성비) <sup>주3)</sup>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지출잔액 <sup>주1)</sup> ⑤-③-④	미결정액 <sup>주2)</sup> (구성비) <sup>주3)</sup> ①-②
<b>총 계</b>	148,741	115,705 (77.8)	115,457	-	248	33,036 (22.2)
<b>일 반 회 계</b>	128,250	111,973 (87.3)	111,756	-	217	16,277 (12.7)
일 반 예 비 비	108,250	108,236 (99.98)	108,019	-	217	14 (0.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18.7)	3,737	-	0	16,263 (81.3)
<b>특 별 회 계</b>	20,490	3,731 (18.2)	3,700	-	30	16,758 (81.8)
기 타 특 별 회 계	9,857	3,207 (32.5)	3,206	-	1	6,649 (67.5)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34	-	-	-	-	34 (100.0)
교통사업특별회계	766	-	-	-	-	766 (1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9	-	-	-	-	299 (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667	-	-	-	-	2,667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4,127	3,207 (77.7)	3,206	-	1	919 (22.3)
균형발전특별회계	589	-	-	-	-	589 (1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9	-	-	-	-	39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7	-	-	-	-	267 (100.0)
소 방 특 별 회 계	1,065	-	-	-	-	1,065 (100.0)
<b>공 기 업 특 별 회 계</b>	10,632	523 (4.9)	494	-	29	10,109 (95.1)
수도사업특별회계	9,985	523 (5.2)	494	-	29	9,461 (94.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7	-	-	-	-	647 (100.0)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5. 4. 7)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가 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세분화되고, ② **일반예비비** 편성규모에 상한선(편성한도액)을 두게 된 것은 '15회계연도부터로서 '14회계연도까지는 구(舊)「지방재정법」 등에서 예비비를 ① 별도로 세분화하지 않고 ②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한선을 두되,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14년 5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는 편성한도(예산총액의 **1% 이내**)를 두되, 편성한도로 인해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별도의 한도 없이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며,
  - 법률(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기준 또한 개정됨에 따라 '15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를 편성한도액이 적용되는 **일반예비비**와 한도 없이 별도로 편성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요건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본질상 지출결정될 규모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 예비비도 서울시의 한정된 자원 중 일부이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편성된 예비비가 회계연도중 지출결정 되고 남게되는 사실상의 예비비중 잉여재원인 미결정액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5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의 전체 예산규모는 직전회계연도(1,361억 200만원)보다 9.3%, 126억 3,900만원 증가한 1,487억 4,100만원이나, 미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회계연도(73.3%)보다 △51.1%p

감소된 22.2%로 확인되는 바,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경우, 편성된 일반예비비(1,082억 5,000만원)의 99.9%, 1,082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함에 따라 미결정액 규모는 1,400만원으로 검토됨

〈표 3-3〉 회계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25회계연도~'23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예산액	지출결정액 (구성비) <sup>주3)</sup>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sup>주1)</sup>	미결정액 <sup>주2)</sup> (구성비) <sup>주3)</sup>
		㉑	㉒	㉓		㉒-㉓-㉔	㉑-㉒
2025	합 계	148,741	115,705 (77.8)	115,457	-	248	33,036 (22.2)
	일반회계	128,250	111,973 (87.3)	111,756	-	217	16,277 (12.7)
	일반예비비	108,250	108,236 (99.98)	108,019	-	217	14 (0.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18.7)	3,737	-	0	16,263 (81.3)
	특별회계	20,490	3,731 (18.2)	3,700	-	30	16,758 (81.8)
일반예비비	20,490	3,731 (18.2)	3,700	-	30	16,758 (81.8)	
2024	합 계	136,102	36,269 (26.6)	36,263	-	6	99,833 (73.3)
	일반회계	111,231	31,741 (28.5)	31,735	-	6	79,489 (71.4)
	일반예비비	91,231	31,741 (34.7)	31,735	-	6	59,489 (65.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0.0)	-	-	-	20,000 (100.0)
	특별회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일반예비비	24,871	4,527 (18.2)	4,527	-	-	20,343 (81.7)	
2023	합 계	148,871	58,209 (39.1)	55,111	173	2,924	90,661 (60.8)
	일반회계	125,001	51,792 (41.4)	48,694	173	2,924	73,208 (58.5)
	일반예비비	105,001	47,442 (45.1)	44,411	173	2,857	57,558 (54.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21.7)	4,283	-	66	15,649 (78.2)
	특별회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일반예비비	23,870	6,416 (26.8)	6,416	-	-	17,453 (73.1)	

주1) “지출잔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2)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3) “구성비”는 최종예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비율)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 28)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④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아울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서울시는 동 예비비가 처음 도입된 '15회계연도부터 '26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되어 왔음에도, 예비비 편성규모는 매 회계연도 동일한 2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 예산액(200억원) 전액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한 '16회계연도와 예산액(200억원) 중 85.4%에 해당하는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20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지출결정된 37억 3,700만원을 제외하고는 세출결산상으로는 불용처리된 바,

〈표 3-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도입 이후 회계연도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출결정액 ②	8,748	20,000	27	-	-	17,087
지출액 ③	6,780	20,000	24	-	-	16,356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②/①	43.7	<b>100.0</b>	0.1	-	-	<b>85.4</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액 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출결정액 ②	1,221	4,558	4,350	-	3,737	-
지출액 ③	1,219	4,021	4,283	-	-	-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비율 ②/①	6.1	22.7	21.7	-	18.7	-

주1) “예산액”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2)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4월말 기준, 그 밖의 회계연도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2026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승인 내역 보고”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도입한 이후 10년간('16~'25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의 비율이 10% 미만인 회계연도가 5개년도로 확인되어 동 예비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는 지양”하고 회계운용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적정한 편성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26회계연도~'22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 <sup>주1)</sup>	예산액 <sup>주2)</sup>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sup>주3)</sup>	미결정액 <sup>주4)</sup>
		㉠	㉡	㉢	㉣	㉡-㉢-㉣	㉠-㉡
2026 (4월말 기준)	합 계	120,494	40,737	40,693	-	44	79,757
	일 반 예 비 비	100,494	40,737	40,693	-	44	59,75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5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28,250	111,973	111,756	-	217	16,277
	일 반 예 비 비	108,250	108,236	108,019		217	1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3,737	3,737 <sup>주5)</sup>		-	16,263
	내 부 유 보 금	-	-	-		-	-
2024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11,231	31,741	31,735	-	6,267	79,489
	일 반 예 비 비	91,231	31,741	31,735	-	6,267	59,4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3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73,208
	일 반 예 비 비	105,001	47,442	44,411	173	2,857	57,558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350 <sup>주6)</sup>	4,283 <sup>주6)</sup>	-	66	15,649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2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76,074
	일 반 예 비 비	127,070	66,436	65,327	12	1,096	60,6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4,558 <sup>주7)</sup>	4,021 <sup>주7)</sup>	-	537	15,441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6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5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납부를 위해 37억 3,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6) '23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취약계층 생활·이용시설에 대해 **한파** 대비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35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침수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침수방지사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8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8억원)을 지출한 것임

주7) '22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코로나19** 관련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 및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27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3억 4,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2년 10월말 발생한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1,300만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6〉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21회계연도~'16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출과목 <sup>주1)</sup>	예산액 <sup>주2)</sup>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sup>주3)</sup>	미결정액 <sup>주4)</sup>
		㉑	㉒	㉓	㉔	㉒-㉓-㉔	㉑-㉒
2021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0,946	89,777	86,767	-	3,010	61,168
	일 반 예 비 비	130,946	88,556	85,547	-	3,009	42,38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221 <sup>주5)</sup>	1,219 <sup>주5)</sup>	-	1	18,778
	내 부 유 보 금	-	-	-	-	-	-
2020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48,037	123,891	123,065	48	776	24,145
	일 반 예 비 비	128,037	106,804	106,709	45	49	21,23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7,087 <sup>주6)</sup>	16,356 <sup>주6)</sup>	3	727	2,912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9 (결산시점 기준)	합 계	211,937	161,411	161,349	-	61	50,526
	일 반 예 비 비	186,336	161,411	161,349	-	61	24,92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5,601	-	-	-	-	5,601
2018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96,981	30,678	30,125	-	553	166,303
	일 반 예 비 비	176,981	30,678	30,125	-	553	146,303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	-	-	-	20,000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7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74,015	4,547	4,313	-	234	169,468
	일 반 예 비 비	154,015	4,520	4,289	-	231	149,49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7 <sup>주7)</sup>	24 <sup>주7)</sup>	-	2	19,973
	내 부 유 보 금	-	-	-	-	-	-
2016 (결산시점 기준)	합 계	152,029	129,230	128,982	-	247	22,799
	일 반 예 비 비	132,029	109,230	108,982	-	247	22,79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20,000 <sup>주8)</sup>	20,000 <sup>주8)</sup>	-	-	-
	내 부 유 보 금	-	-	-	-	-	-

주1) 세출과목 중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함

주2) “예산액”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본예산, 그 밖의 회계연도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된 것임

주3) “지출잔액”은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지출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이월되지 않고 남은 잔액(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사에는 예비비가 지출된 **특정 사업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4) “미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 중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즉 지출결정되지 않은 잔액(예산액에서 지출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결산서의 세출결산 사업별 조사에는 **해당 예비비의 불용액(집행잔액)**에 반영됨

주5) '21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서울사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12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2억 1,9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6) '20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병상 추가운영 등을 위해 170억 8,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63억 5,6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7) '17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① '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지진안전점검단을 운영하기 위해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가금류 수매를 위해 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00만원을 지출한 것임

주8) '16회계연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16년 5월과 10월에 각각 구의역과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인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하철역사(9개소) 노후시설 정비, 승강장안전문 주요부품 조기교체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200억원)을 지출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72 ('26. 4. 7)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은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18억 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한 것임

〈표 3-7〉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결 정액	출 액	지출액	이월액	지 잔	출 액	지결 정액	출 일	지출일	지출사유
기 타 보 상 금	1,805		1,805	-		-	'25. 6.20		'25. 6.24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증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2000 ('26. 4. 7)

- 동 사업의 경우, '25년도 본예산으로 30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및 인센티브 사용률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하여 '25년 6월에는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예산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25. 6.10~6.26) 중인 6월24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추경안 심사기간에 예비비로 사업비 부족분을 지출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6월 중순에 모두 소진하면, 추경안 의결 시점까지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예비비를 사용계획한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은 '22년 12월, 참여자 18만명이 모집된 이후, '24년 12월에는 누적 참여자 수가 약 194만명으로 확대되어 연간 참여 규모 등 운영 데이터가 축적된 사업으로 사료됨에도 '25년 상반기 누적 가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예산의 조기 소진을 예상한 것은 수요예측이 부실하거나 부적정하였던 결과로 사료됨
- 더욱이 '25년 3월,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시점부터 '25년 5월26일 추경안 제출, '25년 6월27일 추경예산 의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조정하거나, 추경안에 추가 소요예

산을 편성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의회로부터 심사·의결 받기보다는 지출결정과 사용이 용이한 예비비를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업부서의 편의가 우선시된 부적절한 선택으로 사료됨

- 미래공간기획관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시설을 공연 및 예식장 등 민간활용 공간으로 재개장하기 위하여 예비비 7억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8,600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3-8〉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 결 정 액	출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간 출 액	지 결 정 일	출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시 설 비	700	586	-	113	'25. 5.27	'25. 8.20			문화비축기지 내 취약한 기반시설 보강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4097 ('26. 4. 6.)

- 동 사업은 '24년 11월 1일, 도시활력담당관으로 분임재산관리관이 변경됨에 따라 '2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미편성하고, '25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예비비로 소요예산이 집행된 사례로 검토되나,
  - 예비비 지출결정일('25. 5.27)이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 날로 확인되어 '25년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의회의 예산심의 보다는 승인이 용이한 예비비를 편의적으로 선택한 사례로 사료됨
-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중도 탈락률 감소 등으로 실제 집행 수요가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예비비 12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원을 지출한 것임

〈표 3-9〉 서울 청년수당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지 결 정 액	출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 잔 액	지 결 정 일	출 액 일	지 출 일	지 출 사 유
기 타 보 상 금	1,200	1,100	-	99	'25.11.30	'25.12.26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부족분 확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p.1503

- 그러나 예비비의 경우, 지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내재적 제약”에 따라 이용·전용·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 예산 부족분 16억 400만원중 12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25.11.20)한 후, 나머지 부족분 4억 400만원은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이차보전금)**에서 **서울 청년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25.12.10)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용·전용·변경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이후 예비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예비비 지출제한을 준수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동 “예비비 사용계획”에는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24년 4~9월, 2,327명에서 '25년도 같은 기간 4~9월에는 843명으로 △63.8% 감소하고, 취업 성공금 지급 대상인 취·창업자는 '24년도 대비 18% 증가하는 등 지급 중단율이 예상(25%)보다 낮아진 사실(22%)까지 기재하고 있어 이미 탈락 인원과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예산부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에도 '25년도 중 두 번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부족분을 보전한 것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한 긴급·불가피한 지출’에 한정하고자 한 제도 취지를 도외시한 예비비 지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실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은 의료급여부담금 부족금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1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3-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세과	출목	지결정 출액	지출액	지잔 출액	지결정 출일	지출일	지출사유
1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예비비	21,320	21,320	-	'25.12.10	'25.12.10	○ 의료급여 부담금 부족
2	사회보장적수혜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37	3,737	-	'25.12.16	'25.12.17	

※ 자료근거 :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23099 ('25.12. 9.)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23100 ('25.12.16.)

- 동 사업의 경우, '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서울시 부담금(2,809억 9,600만원) 보다 △854억 4,500만원 부족한 1,955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①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중 215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② '25년 11월28일부터 '25년 12월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세 부사업간 예산의 변경을 통해 49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고,

〈표 3-11〉 예산 변경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변 승 인 일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21	△374	-	'25.11.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비)	217,051	-	374	
서울형좋은돌봄인증제 운	사회복지보조사업	22,928	△4,331	-	'25.11.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17,425	-	4,331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	△151	-	'25.11.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21,756	-	151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민 간 위 탁 금	3,662	△36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362	-	36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민 간 위 탁 금	2,755	△58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29	-	58	
어 르 신 돌 봄 종 사 자 지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9	△38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423	-	38	
어 르 신 의 료 복 지 시 설 운 영 ( 요 양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7	△161천원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87	-	△161천원	
서울형좋은돌봄인증제 운	사회복지보조사업	18,597	△844천원	-	'25.12.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461	-	△844천원	

- ③ '25년 12월12일에는 세부사업간 전용을 통해 1억 1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표 3-12〉 예산 전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송 인 일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 무 관 리 비	530	△74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87	-	74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요양)	사 무 관 리 비	6	△1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228	-	1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60	△25	-	'25.1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43,398	-	25	

- ④ '25년 12월10일, **일반예비비** 213억 2,000만원과 '25년 12월17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억 3,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3-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소요예산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제1회 추경	최종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변경	전용	예비비		
195,551	21,500	217,051	4,989	101	25,057	247,199	247,199

- 사업부서는 지난 '25년 7월, 행정안전부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을 「재해구호법」과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을 통해 동 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는 “재해·재난”에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한정하여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당초부터

부족편성한 법정·필수적 경비에 대해서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하여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예비비 지출 사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5년도 서울시 부담금보다 필수경비를 과소 편성함에 따라 처음부터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임에도 사업부서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서
- 현행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필수경비를 당초부터 과소편성하여 연도말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까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이라 하여도 지출 형태가 보조금에 해당하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도 예비비의 지출제한중 “실정법상 제약”으로 긴급재해대책 성격일 때에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럼에도 ①여성가족실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아 급증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매칭 시비 23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②관광체육국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도** 정부 제2회 추경('25년 7월)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7억 6,100만원을 매칭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 확인됨
- ①**첫만남 이용권 지원**의 경우, 지난 '25년 9월에 변경 내시되고, ②**어르**

**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지난 '25년 8월에 내시되어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동 조항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 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4〉 예비비 지출액중 보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결정일	지출일	지 출 사 유
계		3,111	-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50	'25.10.21	'25.11.28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61	'25. 8.14	'25. 9. 2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4344 ('26. 4. 8)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4504 ('26. 4. 10)

서울특별시, '25회계연도 결산서중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25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지출한 28건 중 11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 확인됨

〈표 3-15〉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sup>주1)</sup>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sup>주2)</sup> (회계명)	지출결정액 (지출결정일)	지출액 (지출일)	지출사유
<b>합계 ( 1 1 건 )</b>		<b>63,434</b>	<b>66,433</b>	
경제실 (창조산업과)	공사소송대금지급 (일반회계)	121 (’25. 9.18)	121 (’25. 9.19)	○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b>소송대금 지급</b>
경제실 (산업입지과)	공사소송대금지급 (일반회계)	43 (’25. 9.30)	43 (’25. 9.30)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간접비 <b>소송 판결금 지급</b>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일반회계)	40,489 (’25. 2. 6)	40,489 (’25. 2. 7)	○ 부당이득금 반환 <b>소송 판결금</b>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울곡로창경궁앞도로개선공사 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590 (’25. 3.14)	588 (’25. 3. 13)	○ 울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b>민사소송(공사대금) 판결금 지급</b>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회계)	15,536 (’25. 3.25)	15,536 (’25. 3.31)	○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기고지 <b>변상금 납부</b>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금호로확장손실보상금 (도시개발특별회계)	112 (’25.12.16)	112 (’25.12.29)	○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b>소송비용 지급(세외수입 보전)</b>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시민광장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1,048 (’25. 6.17)	1,048 (’25. 6.30)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시민광장 조성) 민사소송 소확정에 따른 <b>판결금 지급</b>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1,100 (’25.12. 2)	1,100 (’25.12.12)	○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행정소송 <b>판결금 지급(대모산, 강남)</b>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355 (’25.12. 3)	355 (’25.12.1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도곡, 강남) 행정소송 <b>판결금 지급</b>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유상매각부당이득금반환 (일반회계)	3,972 (’25. 1.14)	3,972 (’25. 1.15)	○ 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b>판결금 지급</b>
도시건설본부 (총무부총무과)	서울지하철7호선건설손해배상 (일반회계)	62 (’25. 7.10)	62 (’25. 7.16)	○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b>판결금 지급</b>

주1)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된 것이며, 행정 내부의 절차(재결 등)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증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등 재구성

- 우리 시의회는 결산심사시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요구하고 지출결정하는 사례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서울시도 시정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그럼에도 '25회계연도에도 소송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확보한 규모는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일반예비비 지출액(1,117억 1,900만원)의 56.8%로 검토되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6〉 회계연도별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지출 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지출액 ①	일반예비비 전체 지출액 ②	전체 지출액 중 소송결과에 따른 지출액 비율 ①/②
2025	63,434	111,719	56.8
2024	23,627	36,263	65.1
2023	26,615	50,828	52.3
2022	55,355	75,406	73.4
2021	21,173	89,551	23.6
2020	31,429	109,461	28.7

주1) ① 사법절차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이행한 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에 한정된 것이며(재결 등 행정 내부의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제외한 것임), ② 해당 사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즉, 해당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제기된 소송이 없는 것)도 제외한 것임

주2) 모두 일반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서 '20회계연도부터 '25회계연도까지 소송결과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출된 사례는 없음(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8 ('21. 3.24)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1654 ('22. 5. 2)  
 ③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④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09 ('24. 3.28)  
 ⑤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224 ('25. 4. 4)      ⑥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⑦ 각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재구성

-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재적인 제약사항으로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고, ②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재원은 예비비 지출보다는 이용·전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를 사실상 전액(99.9%) 소진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까지 동원된 사례가 있는 바, 예비비 지출 시 예측불가능성과 긴급성을 충족한 사안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예비비의 지출제한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제43조)
    -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403

-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 중 경제실(창조산업과) 소관 **공사소송 대금 지급**은 서울영화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공사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소송대금을 지급한 사례로
  - 동 사업은 2차 전기공사 기간이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인접

건물 안전진단 및 지반보강, 골조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24년 2월29일까지 총 425일이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약 1억 8,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음

- 소송결과('25. 7.25), 1억 2,100만원의 판결금이 확정되었고,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사업부서가 ①'25년 9월8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②9월16일 예산 부서의 승인 후, ③9월19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나, 판결선고일('25. 7.25)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일('25. 9.19)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25. 9.12)된 다음 시점임을 고려할 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소요 예산의 증액 조정을 요청·협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의결 직후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산업입지과) 소관 **공사소송 대금 지급**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임

- 동 공사는 공동수급체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주계약자의 경영상 어려움 및 하도급사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부계약자)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을 청구하고, 1심 소송결과('24. 6.26)에 따라 서울시가 4,300만원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례로,
- 1심 판결선고일('24. 6.26)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2심 판결선고일('25. 9. 3, 항소 기각·서울시 항소 포기) 이후 ① '25년 9월22일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②9월29일 예산 부서가 승인한 후 ③ 9월30일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예비비 지출일('25. 9.30) 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25. 9.12)된

점을 고려하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의결 직후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8〉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명 <sup>주2)</sup>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sup>주3)</sup>
		구성비		지출건수	
합 계	115,705	(100.0)	115,457	28	248
재난안전실	72,633	(62.8)	72,632	5	1
복지실	25,057	(21.7)	25,057	2	0
정원도시국	4,694	(4.1)	4,694	3	0
물순환안전국	4,347	(3.8)	4,347	2	0
여성가족실	2,350	(2.0)	2,350	1	0
시민건강국	1,898	(1.6)	1,895	2	3
미래청년기획관	1,200	(1.0)	1,100	1	99
균형발전본부	1,048	(0.9)	1,048	1	0
관광체육국	761	(0.7)	761	1	0
미래공간기획관	700	(0.6)	586	1	113
서울아리수본부	523	(0.5)	494	2	29
행정국	255	(0.2)	254	3	1
경제실	165	(0.1)	165	2	0
도시기반시설본부	62	(0.1)	62	1	0
비상기획관	4	(0.0)	4	1	0

주1)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2) 지출결정액 규모가 큰 실·본부·국부터 작은 실·본부·국 순으로 정리한 것임

주3) 지출잔액을 원 단위까지 표기할 경우, 재난안전실은 115만 7,463원, 미래청년기획관은 9,950만원, 미래공간기획관은 1억 1,372만 1,010원, 시민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323만 9,190원, 행정국은 138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본부·국은 지출결정액을 전액 집행하여 지출잔액이 0원임

※ 자료근거 : ① '25회계연도 결산서증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194 ('26. 4. 7) 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5. 6.19)**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697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1,487억 4,100만 원 중 1,157억 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54억 5,7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282억 5,100만원
- 지출결정액	1,119억 7,400만원
- 지출액	1,117억 5,6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 1,8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6억 3,300만원
- 지출결정액	5억 2,400만원
- 지출액	4억 9,4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000만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98억 5,700만원
- 지출결정액	32억 800만원
- 지출액	32억 700만원
- 이월액	0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100만원임.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